

산 림 청

시 정 요 구

제 목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미조치

기 관 명 사하구, 기장군

내 용

「산지관리법」 제19조의 규정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, 산지일시사용허가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에 드는 비용(이하 “대체산림자원조성비”라 한다)을 미리 내야 하며,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허가 취소 등을 할 수 있다.

또한 같은 법 제19조제9항,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고지서 발행일부터 20일 이상 90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고지하여야 한다. 다만, 납부하여야 할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처음 고지한 납부기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.

같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·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·산지일시사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‘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

의 중지'를 명할 수 있다.

사하구(○○과)는 【표 1】 과 같이 ‘실무종합심의회 개최 알림(○○동 산000외 0필지)(○○과-0000호, 2016. 1. 19.)’으로 검토의견 요청이 있어, 사하구(○○○○과)는 ‘실무종합심의회 개최에 따른 산지전용 현장조사 보고서(2016. 1. 18., ○○동 산000번지)’를 작성 후 사하구(○○과)로 ‘실무종합심의회 개최에 따른 산림분야(산지전용) 의견 회신(○○동 산000번지, ○○○○과-0000호, 2016. 1. 28.)’을 하면서, ‘대체산림자원조성비 5,565,120원은 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 납부’하도록 하여, 사하구(○○과)는 ○○과-00000 (2016. 5. 10.)호로 ‘건축허가(신축) 알림(○○동 산000번지)-정정’ 사항을 알리면서 ‘대체산림자원조성비 5,565,120원을 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’하도록 허가하였다.

【표 1】 건축허가(공장) 신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협의 요청서

구분	목적	전용대상산지(㎡)			
		소재지	계	보전	준보전
산지전용 협의	건축허가(공장)	○○구 ○○동 000번지	1,488	-	1,488

그 후, 사하구(○○과)에서 건축주 변경(○○○→○○○)에 따라 사하구(○○○○과)에 ‘실무종합심의회 개최 알림(○○동 산000번지외 0필지, ○○과-00000호, 2016. 11. 2.)’으로 검토의견서 제출 요청이 있어, 사하구(○○○○과)는 ‘실무종합심의회 개최에 대한 산지전용 검토보고서(2016. 11. 4., ○○동 산000번지, 변경)’를 작성 후 사하구(○○과)로 ‘실무종합심의회 개최에 대한 산지전용 검토보고(○○동 산000번지, 변경)(○○○○과-00000호, 2016. 11. 4.)’를 하면서, 산지복구비 24,890,220원은 현금 또는 지급보증서·증권·보증보험증권 등으로 예치하도록 하였으나, 미

납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5,565,120원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나, 사하구(○○과)는 ○○과-00000(2016. 11. 2.)호로 ‘건축관계자(건축주) 변경신고 수리(○○동 산000번 지외 0필지)’ 사항을 알리면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5,565,120원을 납부 후 변경신고필증을 찾도록 하였다.

그러나 사하구(○○○○과)는 허가일(2016. 5. 9.)로부터 30일이내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5,565,120원을 납부(2016. 6. 8.)하는 것을 산지전용허가협의 조건으로 하였기에 ○○○이 납부하도록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는데도 발부하지 않았다.

또한 건축주 변경(○○○→○○○)에 따른 변경 허가(2016. 11. 2.)시에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5,565,120원에 대한 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지 않아, 감사일 현재(2017. 3. 8.)까지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5,565,120원이 납부되지 않고 있다.

기장군(○○○○과)은 아래 【표 2】 ‘건축허가(공장) 신청에 따른 산지전용협의 요청 현황’과 같이 (주)○○○○○○ 대표자 ○○○의 산지전용허가 신청에 따라 ‘공장신설승인신청에 따른 실무종합심의회 개최(○○○○과-0000호, 2015. 9. 11.)’로 기장군(○○○○과)에 검토의견 요청을 하여, 기장군(○○○○과)는 ‘공장신설승인신청에 따라 검토보고서(주식회사 ○○○○○00, 0공장)’를 작성(○○○○과-0000호, 2015. 10. 15.) 후 기장군(○○○○과)으로 ○○○과-0000호(2015. 10. 15.)로 ‘대체산림자원조성비 10,125,530원은 고지기간 내 납부’하도록 하여, 기장군(○○○○과)는 ○○○과-00000(2016. 5. 3.)호로 ‘공장신설승인(주식회사 ○○○○○00, 0공장)’ 사항을 알리면서 ‘대체산림자원조성비 10,125,530원은 고지기간 내 납부’하도록 승인하였고,

기장군(○○○○과)은 【표 2】 ‘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산지전용협의 요청 현황’과 같이 ○○○의 건축허가(신축) 신청에 따라 기장군(○○○○과)으로 ○○○○○과-0000(2016. 2. 24.)호로 0부지, 동-0000(2016. 2. 24.)호로 0부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협의 검토 의견을 요청하여, 기장군(○○○○과)는 ○○○○○과-0000(2016. 3. 17.)호, 동-0000(2016. 3. 17.)호로 ‘건축허가(신축) 신청에 따른 검토 보고서(○○리 000-00번지의 0필지, 0·0부지)’ 작성 후 ○○○○○과-0000(2016. 3. 17)호, 동-0000(2016. 3. 17.)호로 회신하면서, ‘대체산림자원조성비 41,424,240원(1부지 : 20,263,320원, 2부지 : 21,160,920원)을 고지기간 내 납부’하도록 하여, 기장군(○○○○과)은 ○○○○○과-000000(2016. 4. 8.)호, 동-000000(2016. 4. 8.)호로 ‘건축허가(신축) 사항(○○리 000-00, 0·0부지)’을 알리면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41,424,240원(1부지 : 20,263,320원, 2부지 : 21,160,920원) 납부 후 건축허가서를 찾도록 하였다.

【표 2】 건축허가(공장) 신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협의 요청 현황

구분	신청자	목적	전용대상산지(㎡)			
			소재지	계	보전	준보전
산지전용협의	○○○ ○○	건축허가 (공장)	○○군 ○○면 ○○리 000-00외 0필지	2,759	-	2,759
산지전용협의	○○○	건축허가 (1부지)	○○군 ○○면 ○○리 000-00외 0필지	5,418	-	5,418
산지전용협의	○○○	건축허가 (2부지)	○○군 ○○면 ○○리 000-00외 0필지	5,658	-	5,658

그러나 (주)○○○○○ 대표자 ○○○의 산지전용협의시(2015.10.15.) ‘대체산림자원조성비 10,125,530원을 고지 기간 내 납부’하는 것을 허가조건으로 하였으므로, 기장군(○○○○과)의 공장신설승인(2016.5.3.) 통보시 즉시 (주)○○○○○ 대

표자 ○○○에게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 고지기간내에 납부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, 공장신설승인일(2016. 5. 3.)로 부터 475일이 경과 후 납부고지서(2016.12.23.~2017.1.31.)를 발부하였으나 감사일(2017. 3. 8.) 현재까지 10,125,530원이 납부되지 않고 있다.

또한, ○○○의 산지전용협의시(2016. 3. 17.) ‘대체산림자원조성비 41,424,240원(1부지 : 20,263,320원, 2부지 : 21,160,920원)을 고지 기간 내 납부’하는 것을 허가조건으로 하였으므로, 기장군(○○○○과)의 건축허가(2016. 4. 8.) 통보시 즉시 ○○○에게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 고지기간내에 납부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, 건축허가일(2016. 4. 8.)로 부터 151일이 경과 후 납부고지서(2016. 9. 1. ~ 2016. 10. 3.)를 발부하였으나 정부합동감사 시까지 41,424,240원이 납부되지 않고 있다.

조치할 사항

사하구청장은

[시정] 미납부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5,565,120원을 「산지관리법」 제19조에 따라 납부하도록 하시고,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지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.

기장군수는

[시정] 미납부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51,549,780원을 「산지관리법」 제19조에 따라 납부하도록 하시고,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지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.